#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 제도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특허청

조 치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내 용

## 1. 업무 개요

특허심판원은 「심판사무취급규정」(2017. 3. 1. 특허청 훈령 제868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2000년 5월부터 특허심판 시 심리종결 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당사자가 필요한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리종결예정시기와 추가자료 제출기한 등을 미리 알려주는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 제도<sup>1)</sup>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2017년에 처리한 9,854건의 심판(결정계 심판<sup>2)</sup>: 4,929건, 당사자계 심판<sup>3)</sup>: 4,925건) 중 7,680건<sup>4)</sup>(결정계 심판: 4,002건, 당사자계 심판: 3,678건)에 대해 당사자에게 심리종결예정시기를 통지하였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심판사무취급규정」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장은 심리종결시기에 대해

<sup>1)</sup> 특허심판은 주로 서면심리로 진행되고, 「특허법」제162조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는 보통 심결 직전에 이루어지므로 당사자가 심리종결시기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증거제출 및 주장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어 제도 도입

<sup>2)</sup> 결정계 심판: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과 같은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 (종류: 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등)

<sup>3)</sup> 당사자계 심판: 이미 설정된 권리에 관련한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심판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여 당사자가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종류: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등)

<sup>4) 「</sup>심판사무취급규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속·우선심판사건, 구술심리 시 구두로 통지한 사건, 심결각하, 청구 각하 사건 등 2,174건(결정계 심판: 927건, 당사자계 심판: 1,247건)에 대해서는 통지 생략

당사자들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심판편람"(2017. 3. 1.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는 심리종결시기로부터 1~2개월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심판장은 심리종결일자와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 내용이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심리종결예정시기의 변경이필요한 경우 재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심판관에게 배정된 사건의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sup>5)</sup>에서 당사자에게 심리종결예정시기를 통지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통지한 심리종결예정시기 내에 심리를 종결하여 특허분쟁을 조속히해결하고, 불가피하게 기통지한 심리종결예정시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통지하여 특허심판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한편 특허심판원은 2016년 1월 심리종결일이 사전에 통지한 심리종결예정시기 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 후 심리 종결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변경통지를 하고,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심리종결 예정시기 준수 여부를 심판부 성과관리지표에 반영하며 심판관 심판시스템의 기한 도래 알림 메뉴에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서를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특허심판원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결정계 심판의 경우 심판부 성과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심리종결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도 특허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계 심판을 우선 처리하도록 한다는 사유로 결정계

<sup>5)</sup> 심판관 지정 후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까지 평균 9.6개월(결정계: 11개월, 당사자계: 8.1개월) 소요

심판에 대해서는 예정시기 변경통지<sup>6)</sup> 이외에 심판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3. 19.~4. 4.) 중 특허심판원이 2017년에 처리한 6,769건<sup>7)</sup>(결정계 심판: 3,837건, 당사자계 심판: 2,932건)에 대해 심리종결예정 시기 준수 여부를 분석한 결과, [표]와 같이 결정계 심판의 심리종결예정시기 준수율이 39.1%에 불과하여 당사자계 심판의 75.3%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특허심판 종류별 심리종결예정시기 준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기한준수 (비율)	기한 미준수(비율)						
		(관리목표) ~3개월					소계	계
			3~6개월	6~9개월	9~12개월	12개월 초과	(3개월 초과)	
결정계 심판	1,501(39.1)	985(25.7)	705(18.4)	291(7.6)	155(4.0)	200(5.2)	1,351(35.2)	3,837(100)
당사자계 심판	2,208(75.3)	518(17.7)	114(3.9)	36(1.2)	20(0.7)	36(1.2)	206(7.0)	2,932(100)

자료: 특허청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심리종결예정시기보다 심리종결이 1년 이상 지연된 결정계 심판 200건 (5.2%)의 지연사유를 확인한 결과 단순 처리지연 67건 및 주심 심판관의 잦은 변경<sup>8)</sup>으로 인한 지연 132건 등 199건(99%, 199건/200건)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심리종결이 장기간 지연처리되고 있었다.

더욱이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 후 심리종결까지 3개월 이상 지연되어 심리종결예정시기 변경통지 대상인 결정계 심판 1,351건 중 당사자에게 심리종결예정시기를 변경통지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하였다.

<sup>6)</sup> 심판시스템 개선작업으로 인해 2016년 9월부터 심리종결예정시기변경통지서를 발송함

<sup>7) 2017</sup>년에 처리한 심판 9,854건 중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건(신속사건, 우선심판, 구술심리 시 구두로 통지한 사건, 심결각하, 청구각하, 취하)과 절차중지 등 정당한 지연사유가 인정되는 사건 총 3,085건(결정계 심판: 1,092건, 당사자계 심판: 1,993건) 제외

<sup>8)</sup> 시 사건의 경우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부터 심리종결까지 1년 4개월가량 소요되었고, 그 사이에 인사이동으로 주 심 심판관이 5차례 변경됨

그 결과 결정계 심판의 심리종결예정시기 준수율이 당사자계 심판에 비해 낮아  $(36.2\%p^9)$  결정계 심판사건 청구인의 특허권리 불확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장기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 후 일정기간(3개월)이 지나고도 변경통지한 경우가 거의 없어 특허심판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특허심판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심판시스템에 결정계심판도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 기한 도래 알림화면을 구축하여 심판관이 심리종결예정시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변경통지 하는 등 사무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특허심판원장은 결정계 심판의 심리종결예정시기 준수율을 높이고 예정시기를 3개월 이상 도과하는 경우 변경통지하도록 심판부 성과관리지표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sup>9)</sup> 당사자계 심판 기한준수율(75.3%)-결정계 심판 기한준수율(39.1%)